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5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노원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행정지원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수립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지정